

인터넷 종합 국제서비스 확대 실시

Home Tax Service(HTS)

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Home Tax Service 의 민원 및 세무신고 분야 등을 확대하여, 11월부터는 납세자에게 한층 더 편안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
민원분야

■ 전자민원증명의 확대

- 민원인이 HTS 홈페이지에서 민원 증명을 신청 후, 발급된 증명내용을 확인하여 제출처에 발급번호를 알려 주면, 제출처에서 HTS 홈페이지를 통하여 증명내용을 조회하는 서비스 〈현행〉 사업자등록증명, 납세증명의 2종 실시 중
 〈11월〉 휴업사실증명, 폐업사실증명, 납세사실증명, 소득금액증명 4종을 추가
 (예) A기관이 甲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, 甲이 HTS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신청?발급 받은 증명번호를 A기관에 알려 주면, A기관이 HTS에 접속하여 증명내용을 조회처리

■ 신고·신청민원의 HTS 접수

- 〈현행〉 기한연장승인신청, 징수유예신청, 심사청구서 등의 신고·신청민원은 직접 세무서에 접수하여야 함
 〈11월〉 기한연장승인신청, 징수유예신청, 심사청구서 등 105종의 신고·신청민원을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

■ 민원처리상황의 HTS 공개

- 〈현행〉 민원접수 후 처리상황을 세무서의 회신 공문에 의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함
 〈11월〉 처리기간이 4일 이상 소요되는 심사청구, 과세적부심사청구,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 등 30종의 민원 처리상황을 HTS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

세무신고 분야

■ 전자세무신고의 확대

-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을 확대
 〈현행〉 세무대리인만 부가가치세, 원천세의 전자신고 가능

〈11월〉 일반 납세자도 특별소비세, 주세, 증권거래세, 인지세, 교통세 및 관련 부가세(교육세, 농어촌특별세)의 전자신고 가능

※ 향후 전자신고 실시계획

- 일반 납세자도 2003.1월부터 부가가치세, 원천세 전자신고 가능
- 첨부서류가 복잡하여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득세, 법인세, 상속·증여세 등 직접세는 2003년 이후 개발 추진

세무 안내

■ 모바일 서비스 확대

- 휴대전화의 문자 메세지를 통해 국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
 〈현행〉 고지사실 안내 및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만 실시
 〈11월〉 환급 및 복권당첨 등의 안내 서비스를 추가
- ※ 향후 모바일 서비스 계획
 - 2003. 5월부터 휴대전화로 고지 및 납부확인, 민원신청 가능

HTS 가입절차 개선

- 국내 공인인증기관(6개)의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HTS 이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
 〈현행〉 모든 HTS 이용신청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HTS 이용신청을 하고 사용자번호(ID)와 암호를 발급 받은 후
- 인터넷으로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D와 암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
 〈11월〉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HTS 이용신청을 하여 ID와 암호를 발급 받아 HTS 이용 가능

자료제공 및 문의——————
 국세청 납세홍보과(02-397-1397)
 E-mail : ho25400@nts.go.kr